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0
------------	----

제출년월일 : 2003.

제출자 : 달성군



## □ 개정사유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 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 기존 조항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 및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통일 개정하여 분리수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실현하고자 함.

## □ 근거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 □ 주요골자

-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
-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 계획 변경 신고의 근거 마련
-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 함
-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 간에 위탁계약 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함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의무 규정 신설

## □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별표, 별지의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제2조제4호중 “원형 그대로”를 “가축의 먹이로”로 하고,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을 “재활용”으로 한다.

제6조제1호중 단서규정중 “다만”을 “이 경우”로 하고,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4호중 “재활용하거나”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로 한다.

제7조제1호중 “7일”을 “30일”로 하고,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제2항중 “제63조제1항제2호”를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100세대”를 “20세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재생처리”를 “처리”로 하고, 단서규정 “다만, 제8조제4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하며,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유지하도록”을 “유지하여야”로 하며 동조제5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군수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2조(정의) (생략) 1. ~ 3. (생략)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 6.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 가축의 먹이로 ----- ----- 재활용 -----.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생략)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00.6.17) 2. ~ 3. (생략)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현행과 같음) 1. ----- ----- ----- ----- ----- 이 경우 ----- ----- ----- 경우를 포함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 ----- -----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생략)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6.17) 2. (생략)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현행과 같음) 1. ----- ----- 30일 -----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②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u>재생처리</u>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 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u>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u>한다.(개정 2000.6.17)</p>	<p>② ----- ----- ----- ----- <u>처리</u> ----- ----- ----- <u>재활용하는 자에</u> <u>대하여도 또한 같다.</u></p>
<p>③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u>유지하도록</u> 한다.(개정 2000.6.17)</p>	<p>③ ----- ----- ----- ----- ----- <u>유지하여야</u> --. ④ (삭제 2000.6.17) (현행과 같음)</p>
<p>⑤ 신 설</p>	<p>⑤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신 설</p>	<p>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군수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폐기물을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6.17)</p>	<p>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 ----- ----- -----.</p>